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0. 3.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세법령이 1999. 12. 2 국회본회의에서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화순군세조례를 개정 및 신설코자 함

2. 주요골자

□ 화순군세개정조례안

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으로 하고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세제분과위원회 이의 신청 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의 위원 구성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로 함 (준칙안)

나. 주민세 소득세할증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 고지분을 관한 세무국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 받거나 부과고지할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도록 함.

(지방세법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 4)

다. 매매등으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 일할 계산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 하도록 하고 일할 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함 (지방세법 제196조의7 및 196조의8)

라.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전환함.

(지방세법 제196조의16 및 제196조의 20)

마. 농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에 맞게 하향 조정함 (지방세법 210조)

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조정함.

3. 관련법령 및 근거

○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제4호 내지 제7호"를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행세

제9조 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의신청"으로 하며, 동조 제2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6항중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한다.

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제2항중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를 "날까지 제22조의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3항중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자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지 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자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38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1,000원미만"을 "2,000원미만"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년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9조 다음에 제3절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주행세

제39조의1(납세의무가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자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39조의2(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39조의3(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 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39조의4(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 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 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본문중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초과	12만원 + 4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72만원 +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초과	672만원 +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초과	1천872만원 + 8천만원초과금액의 100분의 40

제59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항내지 제4항, 제22조의1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세 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20조 제2항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특별징수 하는 경우
2.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3. 19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③제20조 제1항, 제36조 제1항제1호, 제3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자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자액의 100분의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 제4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액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세목)</p> <p>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농지세 5. 담배소비세 6. 도축세 7. 종합토지세 <p>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u>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u>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u>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u>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p>	<p>제3조 (세목)</p> <p>②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 (현행과 같음) <p>4. <u>주행세</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8. (현행 4. ~7. 호와 같음) <p>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① - - - - - <u>이의신청</u> - - - - -</p> <p>②<u>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u> 군에 <u>과세표준심의위원회</u>를 둔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연 행	개 정(안)
<p>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 ⑤ 기재생략</p> <p>⑥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③지방세법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⑥지방세심의위원회외 과세표준심의위원회 - - - - -</p>
<p>제21조 (신고납부)</p> <p>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p> <p>3.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외 만료일</p> <p>③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21조 (신고납부)</p> <p>② - - - - -</p> <p>날까지 제22조의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p> <p><삭제></p> <p>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 - - - -</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u><신 설></u></p>	<p><u>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u></p>
<p><u><신 설></u></p>	<p><u>제22조의1(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자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u></p> <p><u>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되자 한다.</u></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38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u><신 설></u></p>	<p>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9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자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p> <p>제38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p> <p>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이 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신 설></p>	<p>제39조의3(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 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 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p>제39조의4(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p> <p>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5조 (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p> <table border="0"> <tr> <td>(과세표준)</td> <td>(세율)</td> </tr> <tr> <td>400만원이하</td> <td>과세표준액의100분의3</td> </tr> <tr> <td>400만원초과</td> <td>12만원 + 400만원초과</td> </tr> <tr> <td>1,000만원이하</td> <td>금액의 100분의 16</td> </tr> <tr> <td>1,000만원초과</td> <td>108만원 + 1,000만원초과</td> </tr> <tr> <td>2,500만원이하</td> <td>금액의 100분의 27</td> </tr> <tr> <td>2,500만원초과</td> <td>513만원 + 2,500만원초과</td> </tr> <tr> <td>5,000만원이하</td> <td>금액의 100분의 38</td> </tr> <tr> <td>5,000만원초과</td> <td>1,468만원 + 5,000만원초과</td> </tr> <tr> <td></td> <td>금액의 100분의 50</td> </tr> </table>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100분의3	400만원초과	12만원 + 4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16	1,000만원초과	108만원 + 1,000만원초과	2,5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2,500만원초과	513만원 + 2,5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8	5,000만원초과	1,468만원 + 5,0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50	<p>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 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균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균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 내역서를 균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5조 (세율) -</p> <table border="0"> <tr> <td>(과세표준)</td> <td>(세율)</td> </tr> <tr> <td>400만원이하</td> <td>과세표준액의100분의3</td> </tr> <tr> <td>400만원초과</td> <td>12만원 + 400만원초과</td> </tr> <tr> <td>1,000만원이하</td> <td>금액의 100분의 10</td> </tr> <tr> <td>1,000만원초과</td> <td>72만원 + 1,000만원초과</td> </tr> <tr> <td>4,000만원이하</td> <td>금액의 100분의 20</td> </tr> <tr> <td>4,000만원초과</td> <td>672만원 + 4,000만원초과</td> </tr> <tr> <td>8,000만원이하</td> <td>금액의 100분의 30</td> </tr> <tr> <td>8,000만원초과</td> <td>1,872만원 + 8,000만원초과</td> </tr> <tr> <td></td> <td>금액의 100분의 40</td> </tr> </table>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100분의3	400만원초과	12만원 + 4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10	1,000만원초과	72만원 +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4,000만원초과	672만원 +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0	8,000만원초과	1,872만원 + 8,0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40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100분의3																																								
400만원초과	12만원 + 4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16																																								
1,000만원초과	108만원 + 1,000만원초과																																								
2,5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2,500만원초과	513만원 + 2,5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8																																								
5,000만원초과	1,468만원 + 5,0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50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100분의3																																								
400만원초과	12만원 + 4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10																																								
1,000만원초과	72만원 +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4,000만원초과	672만원 +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0																																								
8,000만원초과	1,872만원 + 8,0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4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인)
<p>제59조 (신고납부 등)</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날 10일까지 타군에 납입하여야 한다.</p>	<p>제59조 (신고납부 등)</p> <p>③ - - - - -</p> <p>- - - - -</p> <p>- - - - -</p> <p>- - - - -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p>